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필기시험 지필시험(PBT) 시행 직종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필기시험 지필시험(PBT) 시행 직종)을 「간호법 시행령」 제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간호사	•「간호법」 제4조, 동법 부칙(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3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 2. 1.) 제2조 또는 「의료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간호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률 부칙(법률 제4912호, 1995. 1. 5.) 제4조, 동법률 부칙(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및 동법 부칙(법률 제11010호, 2011. 8.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다만,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20927호, 공포 2025. 4. 22., 시행 2025. 10. 23.)에 따라 변경된 응시자격을 적용

가. <응시자격 관련 전직종 공통 안내사항>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에는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응시제한 결격사유의 경우 시험시행일로 하고, 면허(자격) 결격사유의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합니다. 단, 법령 상 결격사유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나.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위생사> 3·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예정자 포함)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6년 2월 말 이전에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6년 2월말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2급 언어재활사>  
(교과목 이수)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40호, 2012. 7. 27.> 제2조)에 따라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원격대학 관련)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제4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다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6년 2월말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4년 7월 8일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26년 4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6년 4월말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26년 4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6년 4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2.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시험 지역
위생사(제47회)	2025. 8. 26.(화)~9. 2.(화)	88,000원	2025. 10. 22.(수)	2025. 11. 22.(토)	2025. 12. 10.(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치과기공사(제53회)	2025. 8. 26.(화)~9. 2.(화)	135,000원	2025. 10. 22.(수)	2025. 11. 29.(토)	2025. 12. 18.(목)	서울·대구·광주·대전
2급 응급구조사(제31회)	2025. 8. 26.(화)~9. 2.(화)	135,000원	실기: 2025. 9. 4.(목) 필기: 2025. 10. 22.(수)	실기: 2025. 10. 20.(월)~24.(금) 필기: 2025. 11. 29.(토)	실기: 2025. 11. 14.(금) 필기: 2025. 12. 18.(목)	서울·대구·광주·대전·제주
의지·보조기기사(제26회)	필기: 2025. 8. 26.(화)~9. 2.(화) 실기: 2025. 12. 16.(화)~23.(화)	100,000원 65,000원	필기: 2025. 10. 22.(수) 실기: 2026. 1. 21.(수)	필기: 2025. 11. 29.(토) 실기: 2026. 2. 21.(토)	필기: 2025. 12. 18.(목) 실기: 2026. 3. 3.(화)	서울·광주·대전
작업치료사(제53회)	2025. 8. 26.(화)~9. 2.(화)	110,000원	2025. 11. 5.(수)	2025. 12. 6.(토)	2025. 12. 24.(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제42회)	2025. 9. 3.(수)~10.(수)	110,000원	2025. 11. 5.(수)	2025. 12. 6.(토)	2025. 12. 24.(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2급 언어재활사(제14회)	2025. 9. 3.(수)~10.(수)	140,000원	2025. 11. 5.(수)	2025. 12. 6.(토)	2025. 12. 24.(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임상병리사(제53회)	2025. 9. 3.(수)~10.(수)	110,000원	2025. 11. 5.(수)	2025. 12. 14.(일)	2025. 12. 31.(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물리치료사(제53회)	2025. 9. 3.(수)~10.(수)	110,000원	2025. 11. 5.(수)	2025. 12. 14.(일)	2025. 12. 31.(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치과위생사(제53회)	2025. 8. 26.(화)~9. 2.(화)	135,000원	실기: 2025. 10. 2.(목) 필기: 2025. 11. 5.(수)	실기: 2025. 11. 8.(토)~9.(일) 필기: 2025. 12. 14.(일)	실기: 2025. 11. 25.(화) 필기: 2025. 12. 31.(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방사선사(제53회)	2025. 9. 3.(수)~10.(수)	110,000원	2025. 11. 5.(수)	2025. 12. 20.(토)	2026. 1. 9.(금)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영양사(제49회)	2025. 9. 3.(수)~10.(수)	90,000원	2025. 11. 5.(수)	2025. 12. 20.(토)	2026. 1. 9.(금)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간호사(제66회)	2025. 10. 14.(화)~21.(화)	추후공지	2025. 12. 4.(목)	2026. 1. 23.(금)	2026. 2. 13.(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3. 접수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li> <li>•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li> <li>•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li> </ul>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s://www.kuksiwon.or.kr">https://www.kuksiwon.or.kr</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li> </ul>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계좌이체</li> <li>•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li> <li>•가상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li> <li>-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li> </ul> </li> <li>•간편결제</li> <li>•감면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li> </ul> </li> <li>※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로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파일: 276×354픽셀 이상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li> <li>*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1매(3.5cm×4.5cm)</li> </ul>

※ 단, <외국학교 등 졸업자>의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주의사항
1. 면허(자격)증사본 1매 2. 졸업증명서 1매 3. 성적증명서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b>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한하여</b> 해당국가의 한국 주재공관에서 <b>영사 확인</b></li> <li>-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li> </ul> </li> </ul>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학교 등의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함.</li> <li>※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 중 원격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YYYY.MM.DD ~ YYYY.MM.DD. 기간 중 해당 수업을 원격으로 수강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학교 담당자 서명 포함) 원본 또는 Official Letter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li> </ul>
5. 사진 2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용 크기(3.5×4.5 cm)의 동일한 사진 2매</li> <li>•인화지로 출력한 원본만 가능(스캔 후 일반종이 출력물은 불가)</li> </ul>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7.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 「의료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간호법」 부칙(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268호, 1995. 1. 5.)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인정(확인)된 자 및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 접수(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과거 시험 정보찾기-실명인증-로그인)가 가능합니다.
- 제출했던 서류는 5년(서류보존 기간)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마. 필기시험은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하며(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 제외)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필기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 타 지역으로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li> <li>•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li> </ul>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li> </ul>

- ※ 희망 응시지역 내 시험장 또는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
  - 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응시지역 변경은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개인별 시험장소 및 입실시간 공지 이후 2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지역 내 시험장 변경과 입실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사.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수기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20일 전까지,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간호사 (295점)	1	1. 성인간호학(70)                      2. 모성간호학(35)	08:30	09:00~10:35 (95분)	1점
	2	1. 아동간호학(35) 3. 정신간호학(35)                      2. 지역사회간호학(35)	10:55	11:05~12:40 (95분)	
	점심시간		12:40 ~ 13:40 (60분)		
	3	1. 간호관리학(35) 3. 보건의약관계법규(20)                      2. 기본간호학(30)	13:40	13:50~15:10 (80분)	1점
임상병리사 (280점)	1	1. 의료관계법규(20) 2. 임상검사이론 I (80)	08:30	09:00~10:25 (85분)	1점
	2	1. 임상검사이론 II (115)	10:45	10:55~12:30 (95분)	
	3	1. 실기시험(65)	12:50	13:00~14:05 (65분)	
방사선사 (250점)	1	1. 방사선이론(90) 2. 의료관계법규(20)	08:30	09:00~10:30 (90분)	1점
	2	1. 방사선응용(90)	10:50	11:00~12:15 (75분)	
	3	1. 실기시험(50)	12:35	12:45~13:35 (50분)	
물리치료사 (260점)	1	1. 물리치료 기초(60) 2. 물리치료 진단평가(45)	08:30	09:00~10:30 (90분)	1점
	2	1. 물리치료 중재(65) 2. 의료관계법규(20)	10:50	11:00~12:15 (75분)	
	3	1. 실기시험(70)	12:35	12:45~14:10 (85분)	
작업치료사 (240점)	1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20)	08:30	09:00~10:10 (70분)	1점
	2	1. 작업치료학(100)	10:30	10:40~12:20 (100분)	
	3	1. 실기시험(50)	12:40	12:50~13:55 (65분)	
치과기공사 (305점)	1	1. 치과기공학 기초(75) 2. 의료관계법규(20)	08:30	09:00~10:20 (80분)	1점
	2	1. 치과기공학(110)	10:40	10:50~12:20 (90분)	
	점심시간		12:20 ~ 13:30 (70분)		
	3	1. 실기시험(치과기공물제작)	13:30	13:50~ (120분 이내)	100점 (1문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치과위생사 (200점)	1	1. 의료관계법규(20) 2. 치위생학1 (80)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08:30	09:00~10:25 (85분)	1점
	2	1. 치위생학2 (100) (임상치위생)	10:45	10:55~12:20 (85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30점)	1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1(102) (보건의료 정보관리,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08:30	09:00~10:35 (95분)	1점
	2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2(68)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및 기초임상의학, 압등록) 2. 의료관계법규(20)	10:55	11:05~12:25 (80분)	
	점심시간		12:25 ~ 13:25 (60분)		
	3	1. 실기시험(40)	13:25	13:35~15:35 (120분)	1점
영양사 (220점)	1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08:30	09:00~10:40 (100분)	1점
	2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11:00	11:10~12:35 (85분)	
위생사 (220점)	1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08:30	09:00~10:30 (90분)	1점
	2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10:50	11:00~12:05 (65분)	
	3	1. 실기시험(40)	12:25	12:35~13:15 (40분)	
2급 응급구조사 (140점)	1	1. 기본응급처치학총론(20)    2. 기본응급환자관리(20) 3. 응급의료관련법령(20)	08:30	09:00~09:50 (50분)	1점
	2	1. 기본응급처치학각론(60) 2. 응급의료장비(20)	10:10	10:20~11:30 (70분)	
의지·보조기기사 (210점)	1	1. 보건의료관계법규(20)            2. 운동·생체역학(20) 3. 재활공학·재료학(20)            4. 보조기학(50)	08:30	09:00~10:35 (95분)	1점
	2	1. 해부·생리학(20)                    2. 재활의학(30) 3. 의지학(50)	10:55	11:05~12:30 (85분)	
2급 언어재활사 (150점)	1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08:30	09:00~10:15 (75분)	1점
	2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10:35	10:45~11:50 (65분)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 6. 실기시험 범위 및 응시자 준비물

시험직종	실기시험 범위	응시자 준비물										
치과기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기공물 제작능력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도 일체(전기조각도 불가), 칼, 알코올램프 (에틸알코올 포함, 유리재질의 알코올램프는 불가), 토치램프, 연필, 색연필, margin pencil, 눈금자, 각도기, rubber dam, 납형 분리제와 붓, 활택처리용 형걸, 유성펜, wax 털이용 붓, 화장지, 책상덮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책상덮개 규격 및 재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가로(40~65cm)×세로(25~45cm)</li> <li>- 재질: 합성피혁, 폴리프로필렌 코팅된 판 등으로 쉽게 발화하지 않거나 방화 처리가 된 소재(신문지 등 쉽게 발화 가능한 소재 및 그물망 형태 불가)</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램프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등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li> <li>※ 시험 중 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소지한 때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사용한 때에는 부정행위로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li> </ul>										
치과위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석탐지 및 치석제거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백색 라텍스장갑(양손 모두 착용해야 함)</li> </ul>										
보건의료정보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기록지를 이용한 실기 (객관식 5지 선다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도서명</th> <th>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1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개정판(KCD-8)</li> </ul> </td> </tr> <tr> <t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3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개정판(KCD-8)</li> <li>※ 한글색인, 영문색인 무관</li> </ul> </td> </tr> <tr> <td>국제의료 행위분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개정판(ICD-9-CM, Volume 3)</li> </ul> </td> </tr> <tr> <td>종양학 국제질병분류(ICD-O)</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판 1차 개정판 (ICD-O-3)</li> <li>▪ 제3판 2차 개정판 (ICD-O-3)</li> <li>※ 1차 또는 2차 개정판 무관</li> </ul>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도서는 2차적 저작 등 변형이 불가하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舊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 발행한 것만 지참 가능</li> <li>※ 위 도서 외 타 출판사 서적, 위 도서의 제본 또는 복사본 등은 지참이 불가</li> <li>※ 제시된 도서의 구형 도서(old version) 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li> <li>※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3권」 및 「종양학 국제질병분류(ICD-O) 제3판 개정판」은 제시된 두가지 유형의 도서 모두 시험 중 사용 가능</li> <li>※ 시험시행일 기준, 최신 정오사항이 반영된 도서를 기준으로 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정오표 지참 불가하며 개인 지참 도서에 정오사항 기재 가능</li> </ul> </li> </ul>	도서명	세부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1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개정판(KCD-8)</li> </ul>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개정판(KCD-8)</li> <li>※ 한글색인, 영문색인 무관</li> </ul>	국제의료 행위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개정판(ICD-9-CM, Volume 3)</li> </ul>	종양학 국제질병분류(IC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판 1차 개정판 (ICD-O-3)</li> <li>▪ 제3판 2차 개정판 (ICD-O-3)</li> <li>※ 1차 또는 2차 개정판 무관</li> </ul>
도서명	세부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1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개정판(KCD-8)</li> </ul>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개정판(KCD-8)</li> <li>※ 한글색인, 영문색인 무관</li> </ul>											
국제의료 행위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개정판(ICD-9-CM, Volume 3)</li> </ul>											
종양학 국제질병분류(IC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판 1차 개정판 (ICD-O-3)</li> <li>▪ 제3판 2차 개정판 (ICD-O-3)</li> <li>※ 1차 또는 2차 개정판 무관</li> </ul>											

시험직종	실기시험 범위	응시자 준비물
2급 응급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구조사 업무에 필요한 기능 및 배근력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용 포켓마스크(pocket mask, 마우스팁 포함), 영아용 포켓마스크, 라텍스장갑</li> <li>※ 단,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본인이 준비한 다른 소재의 장갑 착용 허용. 배근력 수행에 유리하도록 접지면이 부착된 특수장갑은 금지</li> <li>※ 포켓마스크 미지참 시 인공호흡이 포함된 시험항목에 응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참</li> </ul>
의지·보조기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지 및 보조기 제작능력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식 5지 선다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 7.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방법
간호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영양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위생사	필기시험은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의지·보조기기사 2급 언어재활사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직종별 공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	시험직종
공개	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 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2급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비공개

○ 필기시험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이의신청 일정 및 절차 등은 <별첨2> ‘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기시험 채점(기준)표 및 실기제작 모형(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일 1교시 시험에 결시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1시간 40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필기도구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별첨4'의 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아.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차.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시험직종은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카.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타.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파.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하. 점심시간이 포함된 시험직종(간호사, 치과기공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의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직접 개별 지참하시고, 식사 후 시험장내에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직접 회수하여 최종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료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 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

###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시험장에서 감독관 또는 다른 응시자 등 타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주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 10.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 이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외국학교 등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신청서 1매, 의사진단서 1매, 유효한 면허(자격)증 사본 1매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면허(자격)의 유효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난 날부터 면허(자격)발급이 진행됩니다.

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라.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 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시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면허·자격·증명서-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인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

<별첨2> 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별첨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별첨4> 답안카드 견본

마침